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의안 번호 151 제출연월일 : 2015. 11. 18(수)

제 출 자: 장문혁 대표의원

찬 성 자 : 이범연, 함명섭,

박종욱, 임영순,

박찬원 의원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15년 12월 7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『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』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관계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6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: 없음

심 사 계 획

1. 활동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사안건

-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-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-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3. 활동기간

○ 2015년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○ 이범연 의원, 박종욱 의원, 장문혁 의원, 임영순 의원, 박찬원 의원

5. 운영계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고
2015. 12. 7 (월)	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사특별 위원회 (13:30)	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	